

2018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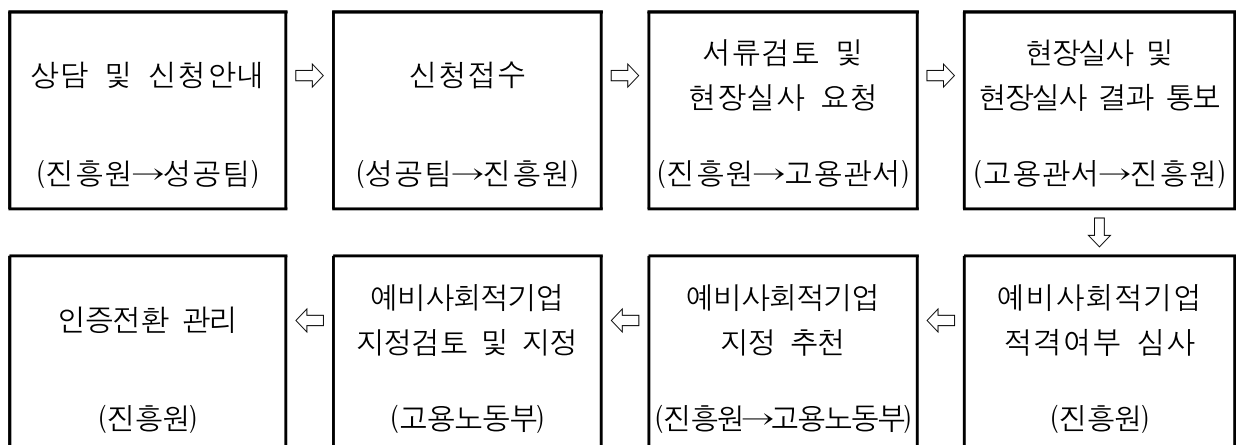
2018. 2. 9.

고용노동부 장관

I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

1. 지정 신청 및 심사

- 신청대상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이하 '진흥원') 주관 '사회적기업가육성 사업'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(이하 '창업성공팀')
- 지정신청: 연중 접수(공고일 ~ 12.31<월>)
- 지정심사: 분기별 심사(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)
- 지정절차:



2.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

* 각 요건별 세부판단기준은 인증심사기준 준용

① 조직형태

- 민법상 법인,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*

*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등
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
② 사회적목적 실현: 기타형

- 조직의 주된목적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,

- 진흥원장이 사회적목적실현 적정여부 등을 심사·추천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

③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(3개월 이상)

○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(최소 1명 이상)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추천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

-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

-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

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/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(정관 등에 기재)

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3. 제출서류

- 예비사회적기업 추천 신청서
 -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
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조직형태 확인 서류(필요시)
 - 유급근로자명부(고용보험가입자명부 포함)
 -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정관·규약
 -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
- * 「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」 상 구비서류 확인

4. 접수처 및 방법

- 접수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- 접수방법: 서식별, 구비서류별로 한글파일로 저장·압축하여 통합 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해 신청
 - * 세부 접수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
- 신청기간 : 공고일~12.31 내 상시접수

5. 문의처
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사회적기업TF팀
 - ☎ 031-697-7791, coyote34@ikosea.or.kr
- 부처형 전문지원기관 '(사)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'
 - ☎ 02-365-0330, joyfulunion@naver.com
 - * 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참조

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[별지 제1호의7서식]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60일
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		
① 신청기관명 (사업자등록기준)		② 대 표 자
③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명 (참여 년도)	(참여년도:)	
④ 연락처(휴대폰)	☎ (휴대전화:) (FAX:)	⑤사업자등록번호
⑥ 소 재 지		
⑦ 조 직 형 태	1.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민법상 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한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합자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리민간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비자생활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영농·영어조합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·어업회사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법인, 비영리단체 2. 법령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으로 보는 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문화단체 등)	
⑧ 지정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㉠[], ㉡[], ㉢[])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타형	
⑨ 유급근로자수	명	⑩ 매출액(3개월 기준) 원
⑪ 주된사업내용		
⑫ 업종	⑬ 소속위탁기관	
⑭ 사업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·예술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산림 보전 및 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사 간병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통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
「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추천신청 합니다.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(서명 또는 인)		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		
구비서류	1.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2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, 사업자등록증,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필요 시) 3. 유급근로자 관련 확인서류 4부 - 1)유급근로자 명부, 2)4대보험가입자 명부, 3)근로자 근로계약서, 4)임금대장 4.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. 정관·규약(공증) 6.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7.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8. 대표자 이력서 9.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	

❖ 작성방법

- ① 신청기관명
 - 법인(단체)명을 사업자등록증 상호명대로 정확하게 기재
 - * 예시: 주식회사 홍길동
- ② 대표자명
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기재하되,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기재
- ③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명(참여년도)
 -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 당시 창업팀명을 기재
- ④ 연락처(휴대전화)
 -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하되, “()”안에 대표자(또는 담당자) 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장 팩스번호 기재
- ⑤ 사업자등록번호
 -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
- ⑥ 소재지
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재
- ⑦ 조직형태
 - 열거되어 있는 조직형태 중 하나만 선택(중복선택 불가)
- ⑧ 지정 유형
 - “기타형”에 한해 추천신청 가능(타 유형 선택 불가)
- ⑨ 유급근로자수
 - 추천신청시점의 유급근로자수(고용보험가입자 기준)를 기재
- ⑩ 매출액
 - 추천신청 직전 3개월간의 매출액 기재하되, “()”안에 직전년도 연매출액 기재
- ⑪ 주된 사업내용
 - 추구하는 사회적목적(소설미션)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재
- ⑫ 업종
 - 사업자등록증 상 ‘업태’를 기재
- ⑬ 소속 위탁운영기관
 -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당시 소속되었던 위탁운영기관명 기재
- ⑭ 사업분야
 - 열거되어 있는 사업분야 중 주된 사업분야 하나만 선택(중복선택 불가)

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

◆ 기관개요

기관명		대표자	
소재지			

◆ 인증요건 충족계획

인증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㉠[], ㉡[], ㉢[])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
조직형태	인증 시 조직형태 -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
근로자 고용계획	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(정규직 00명 등)
사회적 목적 실현	
의사결정구조	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- 이사회,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
정관·규약	정관·규약등 제·개정 계획 -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

◆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

사업목표	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, 사회적가치 등
사업필요성	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, 해결방안 등
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추진 방법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 세부내용, 사업수단, 마케팅 및 홍보, 지역사회 연계 등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제공,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

◆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

영업수입 확보방안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- 위탁계약, 판로개척,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
영업외수입 확보방안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후원금 등 영업외수입 확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 방안 - 회원명부,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

지역사회 협력방안	
기타	
◆ 단계별 세부추진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	
1단계 (0000.00부터~ 0000.00까지)	사업계획수립
2단계 (0000.00부터~ 0000.00까지)	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
3단계 (0000.00부터~ 0000.00까지)	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
4단계 (0000.00부터~ 0000.00까지)	사회적기업 인증 신청
◆ 기타 추진계획	
연계기업,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	

* 필요시 별지작성